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2022년 7월 25일(월) 24시(자정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7. 25.(월)	담당부서	무역구제정책과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4-203-5850)	담 당 자	박종희 사무관(044-203-5849)

장승화 무역위원장,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선고

□ 무역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, '**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**이 WTO(세계무역기구) **상소심 사건에 역사상 최초의 중재판정을 내렸다**'고 밝혔다.

* WTO 상소기구(Appellate Body)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, **현재 상소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**

□ 유럽연합과 튀르키예는 지난 3월 25일 **WTO 역사상 처음으로** WTO DSU(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)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하여 '의약품 국내산업화(localization) 분쟁*'에서 **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**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분쟁당사국들은 2022년 5월 4일, **장승화 위원장**(전직 WTO 상소위원)을 **포함한 3인의 중재인****을 임명**하여 **중재절차를** 진행해 왔다.

* 사건의 정식 명칭은 Türkiye – 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Production,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(WT/DS583).

** 다른 두 중재인은 멕시코의 Mr Mateo DIEGO-FERNANDEZ ANDRADE (AGON 로펌 변호사)와 중국의 Mr YANG Guohua (칭화대 법대 교수)

□ 전세계 **회원국들이** 역사상 처음 시도된 **이 상소심 중재판정을 매우 관심**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, **7월 25일** 24:00(제네바 현지 시간 7.25. 17:00), 중재인들은 **164개 WTO회원국에게 중재판정문*을 회람**하였다.

* 동 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**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**을 가짐. 이 사건에서 터키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함. 유럽연합은 이를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. 이번 상소심 중재절차에서 유럽연합이 최종 승소.

□ **이 중재판정은 현재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으로서,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이 새로운 중재모델을 얼마나 활용할지 주목된다.**

□ 장승화 위원장은 "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, **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**이기에 **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**을 다했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박종희 사무관(☎ 044-203-58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